



휘문 워싱턴지구 교우회 회칙

www.whimoondc.net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휘문 중, 고등학교 워싱턴지구 교우회”라 칭한다. 영어로는 Whimoon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Washington D.C.라 칭한다. (<http://www.whimoondc.net>)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Washington D.C. 일원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자격

1. 정회원: 휘문 중/고등학교 졸업 혹은 학적을 두었던 사람
2. 준회원: 정회원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 성인 자녀
3. 특별회원: 휘문 교직원, 연고자 및 모교나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받은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입안후 이사회에 제출,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이사장의 동의로 실행할 수 있다.

1. 동문 및 그가족을 상대로 사기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주었을 경우,
2. 개인적인 이익을위해 동문회를 악용하거나 동문회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인정

제 3 장 총회

제 8 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 월에 Washington D.C.일원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정회원 20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5 일 이내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총회는 전 동문 회원에게 총회 개최 10 일 전까지 일간지 광고, 일반 서한 혹은 e-mail 등으로 통보한다.
4. 이사회에서 선출한 회장을 인준하며, 당해년도 사업을 보고 받고 재정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임원회

제 9 조, 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 회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먼저 졸업한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 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본 회의 재산과 기물을 보관한다.
4. 부총무: 총무를 보좌한다.
5. 재무: 본 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 본 회의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추가임원: 업무의 증가로 추가임원이 필요할 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등) 단, 산하 친목모임의 임원은 자동으로 본회의 추가임원이 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동문회 산하 친목 모임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1/2 찬성으로 선출, 총회의 인준으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2 조, 임원회의 기능

1. 새 이사와 보궐 이사를 선정한다.
2. 사업 계획과 재정 결산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3.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최근 주소록 및 연락처를 관리한다
4. 회원의 관혼 상제 및 기타 중요 행사시에 본 회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고 경조금을 전달한다.
5. 동문 자녀에대한 장학사업과 각종 봉사활동을 집행한다.
6. 회비 수납, 관리 및 기타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집행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2. 부이사장: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3. 총무이사: 본회 임원회의 총무가 총무 이사를 겸임할수 있다.
4. 이사 : 전임 임원과 기별 대표제를 근간으로 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며 본회의 모든 행사를 지원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개최

정기 이사회는 년 2 회(3 월, 11 월)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10 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15 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5 조, 정족수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회 임원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된다.
2.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6 조, 이사장의 선출및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 이사의 선임

부 이사장 및 임원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며 동문회 산하 친목 모임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및 그 임원이사의 임기

이사및 그 임원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1. 본 회의 회장 및 이사장 선출
2. 새 이사와 보궐 이사의 선임, 인준
3. 내년도 사업, 재정 예산의 심의 및 인준
4. 회칙 개정과 이에 수반되는 시행세칙, 규정 및 기타 본 회의 긴급한 안건의 심의및 승인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 월 1 일부터 익년 11 월 30 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특별 찬조금, 기타 행사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이사회비는 연 \$100 로 한다.
3. 회원의 신분이 학생일경우와 본 회의 고문은 모든 회비를 면제한다.
4.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승인으로 재무가 집행하며 12 월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칙

제 22 조, 회칙의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4 년 5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동문회 친목 모임

1. 동문회 산하 친목 도모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 각 친목모임의 재정 및 주요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타지역 동문회와의 공동행사, 또는 기타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본 회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재정 및 진행 내용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는다.

제 24 조, 경조사 시행세칙

1. 회원 직계 존비속의 아래와 같은 관혼상제에 대하여, 교우회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회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 2) 회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사망
2. 기타 중요한 행사인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우회 명의로 화환만을 보낼 수 있다.

제 25 조, 장학사업 시행세칙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회원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하고, 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결정후 회장 혹은 이사장이 휘문 워싱턴지구 교우회 장학회 (Whimoon Scholarship Foundation, Inc.)에 천거하며 대상자의 선발기준과 지급금액, 지급방법등 시행안은 장학회에서 결정한다.

제 26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 동문회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7 조, 회칙 수정

첫 번째 수정: 2009 년 3 월 07 일 이사회 승인

두 번째 수정: 2014 년 5 월 31 일 이사회 승인

본 회칙의 수정 조항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후,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